

2007. 5. 23

동성 파트너십 제도화의 해외동향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들어가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소위 ‘정상 가족’의 비율이 이미 40%대로 떨어진 오늘날, 사회적 위기까지 부추겨지고 있는 ‘저출산’ (2006년 현재 출산율 1.08)과 이혼율의 급증 등은 “건강 가족 기본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정부 정책이 고수하고자 하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가족 제도’, 그리고 가족을 기본 틀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 제도들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시민과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한편 동성 간 파트너 관계를 비롯하여, 혈연 및 성적 결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서적 경제적 돌봄 관계를 지속하며 창조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는 장애/비장애인들의 다양한 공동체들의 확산은 이러한 시민들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법적 지지와 보호 및 기존 가족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국제적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이 흐름이 여성의 지위 향상 및 권리 향상의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알아본다. 나아가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관한 국내의 담론과 대안 마련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며 외국의 사례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한 국제 정책 동향

1989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파트너십등록법(registered partnership law)”을 시행한 이후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는 1)동성혼의 “완전한 결혼 합법화”를 채택한 국가, 2)동성혼을 “혼인”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하는

법제도(“동성 파트너십 등록법” 등)를 도입한 국가, 3)단지 배우자 간의 혼인 상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국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7년 5월 현재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완전한 결혼 합법화” 라는 방식으로 동성혼을 “혼인” 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PaCS제도나 미국의 하와이 주처럼 동성혼을 혼인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합” 으로 보고 “동성간 파트너십” 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성혼에서 인정되는 상속권, 주거권, 보건권, 건강보험, 연금, 사회보장, 과세, 이혼 시 부양책임, 파트너에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 임대차 계약권, 아동을 위한 사회적 혜택, 배우자 병원 면회권, 배우자 사망 시 시신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부모로서의 권리, 이혼할 권리, 재산 분할권 및 아동 입양권과 부양에 관한 의무 등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선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그 법제화 과정과 주요 내용 및 차이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랑스의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1999년 도입된 프랑스의 PaCS는 “생활(주거와 성관계)을 같이 하겠다는 성인간의 계약” 으로서, 1990년대에 이어진 법원의 동성혼 인정 거부 판결과 동성혼 인정에 대한 사회적 투쟁 과정의 절충안 방식으로 제정된 우회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PaCS는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하지 않은 공동체에 대해 결혼과 동거의 중간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결혼에 비해 법률적 보호의 정도가 낮고 계약의 해소가 쉽다. PaCS의 당사자들은 3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양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결혼 중이 아니어야 한다. PaCS의 파트너는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고, 일방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으며, 계약 3년 후부터 종합세 통합과세를 할 수 있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 계약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방의 통보에 의해 계약 해소가 가능하다. 반면 입양 금지,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친권 금지, 상대방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재산 상속권 불인정, 외국인 파트너의 경우 1년이 지나야 영주권이 허용될 수 있는 점 등이 혼인과의 차이라고 하겠다. PaCS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는 매우 높아 2001년 여론조사에서 70%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시행 5년간의 등록 건수가 14만4천225건, 해소가 1만7천624건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도입 단계부터 계속되어 왔고 동성애자의 완전한 결혼합법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속에서 처음에는 PaCS 도입을 반대하던 우파 진영에서도 현재로서는 절충안으로서의 PaCS를 지지하는 입장임은 물론, PaCS에 부여하는 권리를 확장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 사회당의 경우 동성애자의 완전한 결혼합법화를 지지하고 동성혼 인정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아직 구체

적인 법안을 제출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2) 캐나다의 사례 (다수 주의 동성혼 합법화)

1999년 캐나다 연방법원이 결혼을 통해 받는 재정적 법률적 혜택을 동성커플에게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면서 동성혼 문제가 주요한 사회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질적 혜택을 규율하는 법들이 대부분 연방보다는 지방의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동성혼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주마다 달랐다.

그러던 중 2002년 온타리오 지방방법원이 혼인의 요건으로 “다른 성(sex)” 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장전(캐나다의 헌법)의 평등조항에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동성혼을 혼인으로 등록해 주는 업무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완전한 결혼 합법화가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주요 흐름이 되었다. 이어 2002년 9월 퀘벡, 2003년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동성혼을 혼인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2003년 이후로 캐나다 10개 주 중 8개 주(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주)에서 동일한 판결들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주마다 차이가 있는 결혼에 대한 법률과 해석에 대해 통일적인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캐나다 정부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갔고 마침내 동성혼을 혼인과 같이 보는 “혼인법(Civil Marriage Act)” 을 제정하여 2005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안 통과와 주요 논거는 ①1999년 이후 이미 결혼의 주요한 혜택들이 동성혼에도 부여되어 왔고 90% 이상의 지역에서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는 점, ②동성혼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캐나다의 권리장전에 부합한다는 점 등이다. 반면 보수당과 자유당의 일부가 혼인법 제정에 반대하였었다.

3) 미국의 사례

1971년 최초의 동성혼 배제 판결 이래 계속해서 동성혼 배제 판결이 이어지다가 1993년 하와이 대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동성 커플의 결혼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성에 근거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1998년 알래스카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있었다. 2003년 매사추세츠 주 법원이 동성 커플의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주 헌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2004년 5월 17일부터 매사추세츠 주는 동성혼을 허용하여 왔다.

매사추세츠 주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동성혼은 2004년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부시의 발언을 비판하며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여 다시 논쟁의 불을 지폈고 2006년 현재 약 10개 주에서 동성혼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반면, 2004년과 2005년에 13개 주가 “결혼은 ‘이성’ 의 결합” 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 헌법을 수정하면서 동성혼을 쟁점으로 하는 미국 사회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의의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리 향상의 측면에서)

여성 억압의 가장 근본적 메커니즘인 가부장제를 세습하게 하고 개인과 가족과 사회 안에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성별화된 노동, 공/사 영역의 분리)을 강화시켜주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가족’은 제도로서든 이데올로기로서든 혹은 현실에서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따라서 이성애 핵가족을 전형으로 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균열이 나면서 실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공동체)를 지지하고 보호한다는 면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법 제도화는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법 제도화는 “양성평등한 가족”이라는 현 정부의 여전히 구시대적인 가족 담론의 한계를 넘어서 양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가족(독신 가구, 한부모 가족, 동성애자 가족) 뿐 아니라, 혈연과 성적 결합의 여부를 떠난 다양한 자발적 공동체로까지 가족 개념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담론 소개와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다양한 공동체 및 가족에 대한 제도화 주장이 단순히 현재의 가족제도에 자신들을 끼어 맞추어 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관점이라면 이는 ‘정상 가족’ 및 ‘정상적 성’ 이데올로기에 편입 복종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민주노동당 안팎의 가족 관련 연구 활동가들의 모임인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에서는 외국의 다양한 법제화 사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재 우리의 사회복지제도(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와 공공주택 제도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구체적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공동체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보호를 위한 한국 현실에 적합한 법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통 문화와 뿌리 깊은 가족주의를 거론하며 가족 제도 주변의 변화된 다양한 현실과 요구를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또한 이미 십 수 년 전에 제도화되어 재개정의 요구들이 확산되고 있는 서구의 법제도들을 겨우 답습하기에 그치는 것 역시 또 다른 시대적 역행에 머무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 마련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성애/남성 중심의 가족이데올로기의 해체와 함께 현재의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을 ‘실질적인 친밀감과 돌봄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미국의 동성혼 제도화 과정에서 보여 지고 있는 사회 전반의 역보수화 현상은 우리의 다양한 가족구성권 제도화 운동이 사회 변혁의 다양한 진영들과의 긴밀한 연대와 지지 속에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